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5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임종득・우재준・송언석

김예지 • 박대출 • 김석기

김상훈 • 이달희 • 강대식

김기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, 시·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.

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 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(생	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
	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
	구분하여 실시한다.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